



보내는 사람

□□□ - □□□

행정우편

받는 사람

□□□ - □□□

..... 접 는 선

제 호		
기능검정원·강사 자격 (□정지·□취소) 결정통지서		
자격증 번호	학과교육강사	
	기능교육강사	
	기능검정원	
행정처분	취 소 처 분	년 월 일
결정내용	정 지 처 분	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일간)
사 유		
「도로교통법」 (□ 제106조제5항, □ 제107조제5항)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(□ 취소, □ 정지)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·도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		
..... 접 는 선		
안내전화:		담당자: 년 월 일
시·도경찰청장		직인
※ 알려드립니다.		
1.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.		
2.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